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47
----------	-------

발의연월일 : 2026. 2. 6.

발 의 자 : 이연희 · 전용기 · 송재봉
김정호 · 이정문 · 박상혁
김남희 · 서미화 · 안태준
정준호 · 허종식 · 문진석
임미애 · 이춘석 · 최혁진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은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기준 없이 운영되어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통일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 이용 편의 증진, 그리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새로운 교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개인 소유 기기에 대해서도 사용 신고 및 번호판 부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아울러, 운전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안전모 착용 등 이용자 준수사항과 기기의 안전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시설 확충 등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술 개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다.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소유한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신고를 하고, 지정받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별도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전자 관리를 강화함(안 제9조).
- 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차허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7조).
- 사.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거치대 설치, 공영 대여사업 운영,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 설치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아.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
- 자. 개인형 이동장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그러한 기기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8조).
- 차.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9조).
- 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양도·양수, 약관 신고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타.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반드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파. 대여사업자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승차정원이 1인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속도와 중량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장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및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개

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산업 진흥과 기술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이하 “활성화및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및관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활성화및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정비의 기본방향
2.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 방안
3. 수립된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및관리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및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및관리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및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

화및관리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신고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취득하여 이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받으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번호를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신고 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폐

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양수한 소유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개인형 이동장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신규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대장의 작성에 필요한 개인형 이동장치 제작정보를 제35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의 부착) 제7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번호를 지정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 또는 번호표(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이라 한다)를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격)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수행하게 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수행하게 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을 빌려 준 경우

5.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수행하게 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을 빌리는 행위

6. 제1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이 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허용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중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④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곳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허용구역과 주차금지구역에는 안전표지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대여사업자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설치 등)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및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정시킬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손쉽게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시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정한 구역 또는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의 지정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또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거나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이하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시설·수리센터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및 개인형 이동장치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 제고, 이용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 보급을 위하여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2. 배터리, 충전시설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통합 관리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개발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및 연구성과의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시험·실증사업 지원, 데이터 개방 및 공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등

제15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을 보유할 것
2.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3. 개인형 이동장치에 2명 이상이 동승하지 아니할 것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5.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10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된 구역에 주차할 것
6. 그 밖에 「도로교통법」 및 이 법에서 정한 교통안전 규정을 준수할 것

제16조(개인형 이동장치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보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저해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요건)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구조와 성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1항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교육 등) 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

한 이해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방법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0조제3항에 따른 대여사업자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여사

업자단체는 이용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이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제20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 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에 사용할 것
2.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대여사업자”라 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대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대여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2

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4. 대여사업자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3조에 따른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6. 제24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7. 제2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8. 제2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8조를 위반하여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9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경우
 12. 제30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사업 경영을 한 경우
 14. 이 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등) ① 대여사업자는 다른 대여사업자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가 다른 대여사업자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

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여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가 다른 대여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

제25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여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대여사업자인 법인이 대여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양수한 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양도한 자의 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6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상속) ① 대여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제27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휴업·폐업) ① 대여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

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8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약관)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에 관한 표준대여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신고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개선명령) ① 시·도지사는 이용자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

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임차인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임차인이 제9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보유하지 아니 하거나 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할 것
2.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중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것

제31조(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대여사업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3조(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설치)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대여사업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대여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여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여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

는 자 중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이용자 안전 교육 및 안전 이용 캠페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여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3. 대여사업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대여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협회의 지도·감독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 현황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현황

2. 대여사업자의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및 대여사업 현황
3.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운영 현황
4.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에 관한 현황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및 대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방법과 공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자료제출 요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사업자에게 대여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청문) 시·도지사는 제22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9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대여사업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

업정지 처분이 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40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3. 제23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5.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2.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3.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4.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2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⑤ 제15조제1호를 위반하여 제9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하고(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대여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8조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제9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제3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